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원칙) 복지용구에 대한 사용설명은 수급자 본인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 대부분이 고령의 수급자이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제품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제품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용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신체기능의 저하를 예방한다.
4. 복지용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되면 복지용구제공사업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에는 회수 또는 계약중단 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해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복지용구 하자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자 건강, 질병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시설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즉시 기관에 통지할 의무

4)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의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제품의 오손,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따른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 한도	구분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내역
160 만원	일반 수급자	85%	15%	전체금액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이 부담
	경감 수급자	91%	9%	전체금액 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이 부담
	의료 수급자, 경감 수급자	94%	6%	전체금액 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이 부담
	기초 수급자	100%	0%	전체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7. 계약의 해지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시설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